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의식 및 영향분석
(A Study on Tax Agent's Consciousness
about Introduction of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김동욱* · 고성효** · 이상봉**
(Kim, Dongwuk · Ko, Seonghyo · Lee, Sangbo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사 사무실 직원들의 의식구조를 통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정분야에서 필요한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세무·회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강한 부정적인 입장과 세무·회계업계 장래를 위축할 것이라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탈세방지의 효과는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비간부급이 간부급보다는 탈세방지의 효과에 덜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90% 신뢰수준에서는 규모가 큰 세무·회계사 사무실일수록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설문지 응답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도입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는 하지만, 전자장부기입으로 탈루를 방지할 수 없고, 성실 사업자의 선별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또한 전자장부의 기입의 어려움이나 현실상 없앨 수 없는 장부기입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편의성은 세무당국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글 색인어 : 성실납세제도, 세무대리인, 탈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I. 서론

2005년 3월부터 참여정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일부 사업자들에게 간편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성실납세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하는 납세협력비용 없이도 전자장부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논의에서 성실납세제도 도입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는데, 2006년 1월에 정부가 또 다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되고 있다. 성실도가 보장되면 일체 세무조사도 배제하고 과표노출에 따른 세 부담 증가분은 일정기간 감면하는 등의 특혜도 주고 사업자들에게 복잡한 세금계산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하지만 회계사·세무사의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는 중소사업자의 소득파악이 더 어렵게 돼 축소신고, 근로자와의 조세 불평등, 탈세 등 우리나라 세무현실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회계나 세무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복잡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춰 빠짐없이 기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소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세금을 낼 때 각종증빙, 장부작성 등으로 파생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신고 및 납부방안을 강구,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이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러 찬반의 의견이 존재하며, 특히 장부기장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회계에 관련 근무자들의 반발이 크다. 특히, 이 제도는 도입하려는 정부만이 찬성하고 있고 세무대리인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근로소득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여당, 야당은 적극인 반대내지는 제한적 찬성을 하고 있다(세무사회, 2005). 이 논문은 이 제도의 직접적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세무행정에 관한 복잡성과 홍보부족 때문에 무인지, 무관심과 무반응이어서, 이 들판는 다르게 강력한 반대의견을 갖는 세무·회계 관련 종사자의 의식을 통해 세무대리인에 미치는 영향과 성실납세제도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II. 성실납세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2.1. 성실납세제도의 적용대상 및 내용

이 제도는 현재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중 자기조정 사업자 기준금액 이하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각종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일부 성실한 중소사업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전자장부를 활용해 거래내역을 간단히 기장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케 하는 제도이다. 초기의 성실납세제도(안)는 소형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매출액의 일정률만을 세액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최종안은 복잡한 세금계산을 더욱 단순화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한 전자장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전자장부에 매출액, 매입액, 경비 등 몇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 계산되고, 이를 기초로 세무서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복식 부기 의무사업자 중 자기조정이 가능한 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 도소매·광업 등은 매출액 6억원 미만, 제조·건설·숙박업 등은 3억원, 기타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도소매·광업 5억원 미만, 제조·건설·숙박업 등은 5억원, 기타 서비스업은 5억원 미만 등으로 잠정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기준금액 이하 사업자들 중 '거래의 투명성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장비를 갖춘 사업자(ERP장비, POS시스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등)'에 대해 2007년부터 선택적으로 성실납세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6만 명, 법인사업자의 경우 5000~1만 명 등 총 7만여 사업자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자격대상에게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임의 포기 시에는 5년간 선택제한을 하게 된다. 매출액 증가로 기준을 초과 시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2007년 1월1일 이 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성실납세제도는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대신 일률적인 개산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의 개산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제도의 과세소득방식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세무조정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하였다. 우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계상한 것으로 보고 강제상각하며 상각방법도 정액법으로 단일화 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도 건물은 20년, 그 외 자산은 5년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다. 즉시 상각 형태인 당기비용 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접대비의 손비인정 한도액도 정액한도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성실납세제도 적용대상을 매출액 기준 10억 이하로 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부금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0.5%이내에서 인정한다. <표 2-1>은 현행 일반과세제도와 성실납세제도의 과세소득계산의 개정 내용 차이점을 정리한 표이다.

〈표 2-1〉 과세소득 계산의 개정내용

변경내용		감면금액								
감 가 상 각 비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임의상각)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한도계산(강제상각)								
	□ 상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 정액법으로 단일화								
	□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내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고정자산 : 5~50년 ○ 기계장치 : 업종(5개 그룹)별 기준내용연수(5, 8, 10, 12, 20년) ○ 건물 : 20년 또는 40년 	□ 단일 내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건물은 20년) 								
	□ 특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 50%경과 중고자산 : 내용연수의 50%~100% (선택) ○ 연도중 취득자산 : 월할계산 ○ 즉시 상각 (당기 비용) : 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 	○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자산과 동일 내용연수 								
		○ 상각범위액의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으로 인상 								
접 대 비	□ 접대비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적용률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매출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률</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5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0.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0.03%</td> </tr> </table> 	매출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정액 한도로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간편납세적용 대상을 매출액기준 10억 원 이하로 하는 경우 최대한도인 2,000만원
매출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지출증빙 수취의무 등	○ 적용									
기 부 금	□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 기증금품 등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 국립대병원 등 ○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학술, 장학, 종교단체 등 	□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의 0.5% 								
	* 한도초과액 3년간 이월공제	* 이월공제 배제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의식 및 영향분석 • 5

준비금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한도 : 총급여액의 10% ○ 누적한도 : 퇴직금 추계액의 40% 총당금 <input type="checkbox"/> 퇴직보험료 등(사회적립)의 누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 추계액 - 충당금)상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 각종 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로 축소 *일반기업도 동일 ○ 총급여액의 25% ○ 한도 계산 없이 전액 손비인정 ○ 적용 배제
각종 경비 <input type="checkbox"/> 다음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인 출자, 업무무관 자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여비, 공동경비 등 : 기준 적합시 손비인정 <input type="checkbox"/> 외화자산 ·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도말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손익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배제 ○ 전액 손비인정 ○ 적용 배제

자료출처: 2005년 재정경제부 국회감사자료, 세제실

〈표 2-2〉 세액 계산 및 신고 · 납부

개 산 세 액 공 제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등 ○ 세율: 1억원 이하 13%, 초과 25%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 ·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불산입 ○ 비과세 ○ 소득공제 ○ 준비금 ○ 세액감면: 창업감면 등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투자, 임시투자 등 	<input type="checkbox"/> 좌동 <input type="checkbox"/>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하되,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개산세액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10% ○ 비수도권 : 20% * 본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10%) 배제 - 농특세(감면세액의 20%) 비과세
--	--

현행 세제			
세 매부 출담 증경 가감 에 및 따경 른정 비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매출액이 1.3배 이상 증가한 ERP등 도입 중소기업,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 등에 대해 ○ 일정기준(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신장률)을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 세액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1년차 100%, 2년차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 배제 ○ 중빙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배제 		
신 고 · 납 부 절 차 간 소 화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5억원이상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 : 다음 방법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 당해연도 6개월분 가결산 </td><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결산 방법 배제 </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5억원이상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 : 다음 방법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 당해연도 6개월분 가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결산 방법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5억원이상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 : 다음 방법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 당해연도 6개월분 가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결산 방법 배제 		

자료출처: 2005년 재정경제부 국회감사자료, 세제실

2.2. 성실납세제도 외국실시 사례

외국에서도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2-3〉 성실납세제도 외국실시 사례

미국		호주	독일
대상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5백만 달러 이하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1백만 호주달러* 이하인 개인사업자(비거주자도 포함), 기업, 파트너쉽, 트러스트 등 - 감가상각자산의 상각가능 금액이 3백만 호주달러 이하일 것(1 호주달러 ≈ 830원) 	개인사업자 중에 전문 인적 용역 제공자

특례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하여 현금주의 적용	
	제한 조항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하여 현금주의 적용 - 재고자산은 수입 금액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 현금주의 적용이 가능 - 회계방법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국세청장의 사전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방법을 간소화하여 개별자산가액이 1천 호주달러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즉시 상각하고, 1천 호주달러 초과 자산 중 내용연수가 25년 이하인 자산은 단일 상각율(30%)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 재고자산의 경우 기초 및 기말재고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와의 차이가 5천 호주달러 이내이면 기말재고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및 실제조사의 생략이 가능 -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전신고 - 성실납세제도를 선택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간 적용 배제

자료출처: 2005년 재정경제부 국회감사자료, 세제실

2.3. 성실납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국세청이 시행한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편의제도나 개혁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편이다 (심태섭, 2001, 75). 특히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집단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을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일반적인 납세제도와 관련된 탈루규모, 납세자의 성실성, 세무대리인의 역할, 기장제도와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먼저 검토해 볼으로서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 요소들을 간접적으로 정리를 해보기로 한다.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성실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절차를 전자장부기장을 통해 간소화해 성실하게 신고해온 중소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성실성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소득 신고의 불성실을 지적하고 있다. Yoo and Hyun(199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규모가 독일이나 대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규모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추정의 방법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임주영·정영현(1995)은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의 소매업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나타난 소매업 매출총액의 차이를 무자료 거래규모로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1990년에는 41.7%, 1991년에는 44.4%로 계산 되었다. 유일호(1998)는 1993년과 1994년 탈세규모를 추정하였는데 1993년에는 74%, 1994년에는 52%로 추

정하였다. 현진권(2003)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자영업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관관계가 근로소득자보다 낮게 나타나 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가 불성실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Nagin(1990), Falkinger and Walther(1991), Smitsch and Stalans(1991) 등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액감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 대상비율 적용 등의 유인정책 수단들이 처벌위주의 정책수단들에 비해 납세순응을 유도하는데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어 성실납세제도 도입이 긍정적 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방식은 기존 재무제표의 제출의 면제를 의미한다. 국중호(2002, 27)는 2000년 기준으로 반수 이상이 기장 없이 신고 하여 무기장 추계과세를 적용받고 있고 대규모사업자보다는 소규모사업자들이 특히 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기장세액공제나 간편장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납세자는 이들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무기장에 따라 추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의 납세액을 고려하여 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기장공제액 등 인센티브방식의 제도가 기장신고납세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무기장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신고납세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성실납세제도는 기존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전자장부를 권하고 있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자의 기장 능력이나 기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로 인해 근거과세정착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납세자의 의사결정에도 왜곡을 가져와 초과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재정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436만 명 중 47.5%인 207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자영업자로 파악되고, 농어민인 경우는 파악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 같은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 기준 기장의무가 있는 자영업자의 50.1%만이 장부를 기입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무신고에 있어서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는 Collins 등(1990)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고객은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한 세무신고서의 작성기능을 가장 중시하며, 납부세액의 최소화 등을 그 다음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전태영(1998)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세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는 변화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에 간편성을 강조하는 정당성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3.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사·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의 의식구조를 설문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서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회계·세무직 종사자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기간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2005년 11월 23일까지 10일간 시행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제주지역의 공인회계사·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임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5개의 불성실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설문지는 기초정보를 포함한 총 2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본 조사 분석은 기초정보설문을 제외한 총 20개 문항 중에 본 연구에 주제에 직접 관련된 11개 문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엑셀과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응답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직급, 기장업체수를 사무실 크기로 대응하고 변인별 응답 비율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χ^2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카이 분석의 대상 설문은 자의적으로 정한 주요한 3개 변수에 대해서만 카이분석을 실시하였다. 11개 주요 설문 중에서 세금 공정성, 정확한 세금계산 가능성, 세원 확보 투명성은 세금 탈루 가능성으로 대변 될 수 있기 때문에 탈루가능성 변수에 대해서 직급별, 규모별로 카이분석을 하였다.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도 제도 도입의 장점과 단점이 연결되는 문항이라 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도 카이분석을 하였다. 그 외 세무업계의 변화예상 설문에도 카이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자료 분석

3.2.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별의 경우 20대가 34명(42.5%), 30대가 28명(35%)이며, 직급별인 경우 회계사·세무사가 12명(15%), 사무장이 10명(12.5%), 과장·대리는 17명(21.3%), 근무자가 41명(51.3%)으로 분포되어 있다. 기장업체의 수로 본 회계·세무 사무실의 크기는 비공개 사무실 21개를 제외하면 100개 이하는 31개(52.5%), 100~200개는 19개(32.2%), 200개 이상은 9개(15.3%)로 나타났다. 연령별, 직급별, 기장업체수별로 관련된 응답자의 특성요약은 <표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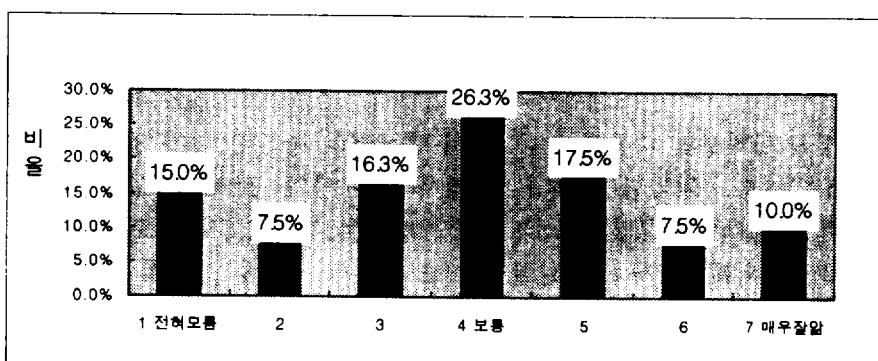
〈표 3-1〉 연구 대상

구분	인구	인구 대상	%
연령별	10대	2	2.5%
	20대	34	42.5%
	30대	28	35.0%
	40대	11	13.8%
	50대 이상	5	6.3%
	계	80	100%
직급별	회계사·세무사	12	15.0%
	사무장	10	12.5%
	과장·대리	17	21.25%
	근무자	41	51.25%
	계	80	100%
기장업체의 수	100개 이하	31	38.8%
	100~200개	19	23.8%
	200개 이상	9	11.3%
	비공개	21	26.3%
	계	80	100%

3.2.2 성실납세제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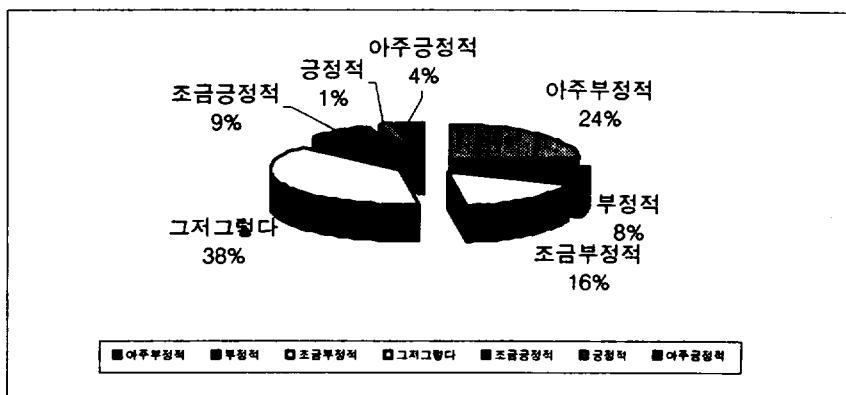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10%만이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15%는 '전혀 모른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여기에서 60%정도가 '약간 알거나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등의 중간적인 응답이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이기는 하나 추후 전담하게 될 국세청에서 조차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제도 도입 시 직면하게 될 전문가 집단인 회계사·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조차도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직접적인 이용자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자의 성실납세제도의 인지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분석 대상인 회계사·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10분간 성실납세제도 개요를 설명을 하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림 3-1〉 성실납세제도 도입 인지 현황



3.2.3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그림 3-2〉 성실납세제도 도입견해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4%만이 '아주 긍정적', 1%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24%는 '아주 부정적', 8%는 '부정적', 16%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대다수가 도입에 있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더 많이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급별에 의한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견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직급을 두 군으로 나누어서 회계사·세무사와 사무장을 간부급으로, 과장·대리와 일반근무자를 비간부급으로 분류하였다.

〈표 3-2〉 성실납세제도 도입견해 카이분석

		간부급		비간부급		합계			
		간부급	비도 %	비간부급	비도 %	합계	비도 %	카이제곱	P값
직급	간부급	13	16.25%	8	10.0%	1	1.25%	22	27.5%
	비간부급	13	16.25%	43	53.75%	2	2.5%	58	72.5%
합 계	비도 %	26	32.50%	51	63.75%	3	3.75%	80	100%
사무실 규모	100개 이하	11	18.64%	20	33.90%	0	0.00%	31	52.54%
	100~200	6	10.17%	11	18.64%	3	5.08%	20	33.90%
	200개 이상	2	3.39%	6	10.17%	0	0.00%	8	13.56%
합 계	비도 %	19	32.20%	37	62.71%	3	5.08%	59*	100.0%

*: 비공개 응답이 21개 이었음(80-21=59개).

도입에 대한 견해를 표본 수가 작고, 대부분 셀이 5보다 적은 기대빈도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스케일인 1과 2를 '부정적', 아주 긍정적 스케일인 7과 6을 '긍정적', 나머지 중간을 '그저 그렇다'로 분류하여 카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급별에 대한 카이 제곱값은 10.2231, p값은 0.0060으로 직급별에 따른 회계·세무사무실 직원들의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회계·세무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 회계사·세무사와 사무장 등의 간부급들이 성실납세제도에 대해 비간부급인 일반근무자들에 비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무·회계 사무실규모와 성실납세제도 도입 견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에 관계없이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긍정적이기 보다는 유동적이거나 부정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될 시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으로 '납세자의 납세편의성 도모'가 38.8%, '세무당국의 납세징수 편의성'이 32.5% 나타나는 등, 성실납세제도가 세무대리인의 편의성이나 혜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편의성을 도모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납세자의 세무대행료가 절감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수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표 3-3> 성실납세제도 장점

장점	응답 횟수	비율 (%)
조세의 형평성	1	1.25%
부익부 빈익빈의 완화	2	2.50%
성실신고로 인한 세수확보	6	7.50%
납세자의 납세편의성 도모	31	38.75%
세무당국의 납세징수 편의성	26	32.50%
기업의 세금 및 장부작성 대행료 절감	12	15.00%
세무·회계사의 세무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2	2.50%
합계	80	100.00%

또한 '조세의 형평성', '부익부 빈익빈의 완화', '성실신고에 의한 세수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아주 극소수로 성실납세제도 도입의 목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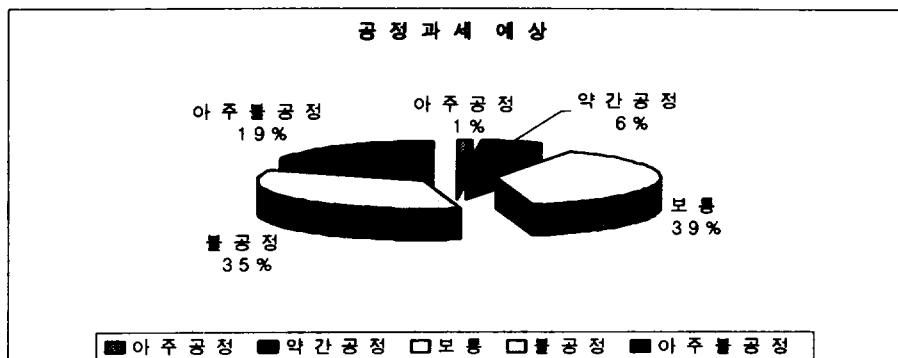
<표 3-4> 성실납세제도 단점

전자신고에 의한 회사정보 유출 우려 및 오류발생 가능성	7	8.75%
세무대리의 존재이유 불확실	24	30.00%
자진납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세무당국의 탈세조장	20	25.00%
회계정보 및 프로그램 인식 부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 우려	10	12.50%
B/S, I/S의 필요에서 오는 이중장부의 번거로움	5	6.25%
부족한 세무 정보에서 오는 오류 신고	14	17.50%
합계	80	100.00%

〈표 3-4〉에 나타난바와 같이 성실납세제도의 단점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예상대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의 축소'가 30%, '자진납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세무당국의 탈세조장'을 25%, '부족한 세무 정보에서 오는 오류 신고'가 17.5%로 나타나 성실납세제도의 원래 취지인 세원확보와 납세자 편의성을 달성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을 펴고 있다.

3.2.4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금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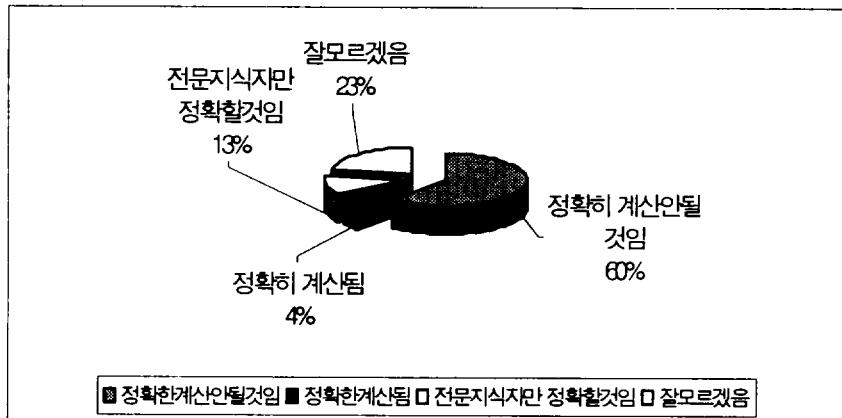
〈그림 3-3〉 공정과세 예상



성실납세제도 도입 시에 공정한 과세여부 달성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39%가 '보통일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5%는 '불공정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19%가 '아주 불공정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아주공정'과 '약간공정'의 응답은 7%정도만 응답한 걸로 보아 이는 성실납세제도를 도입 후에 납세의 공정성 달성가능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세의 불형평성 혹은 불공정성 견해는 납세성실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실납세제도 도입 취지에 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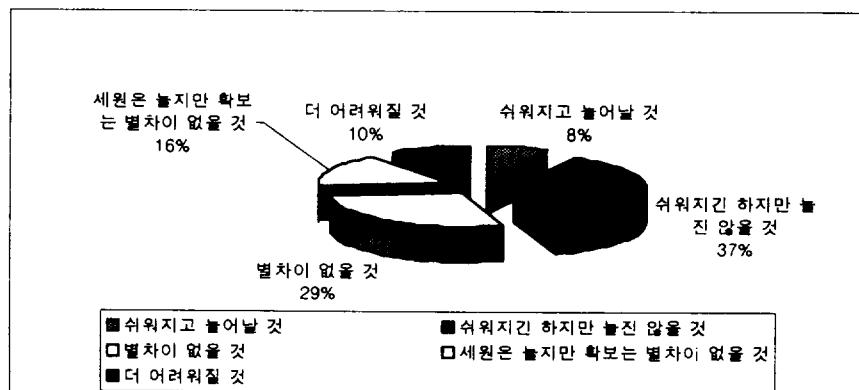
또한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확한 세금계산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60%인 대다수가 '정확한 세금징수가 불가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23%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3%가 '경리직원을 둔 사업장만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실납세제도가 전자장부로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에 대해서 과세소득의 계산방법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간편납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에 전념해야 할 사업자가 새로운 전자장부의 기장요령을 배워 직접 기장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예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이 제도를 통해 납세이용비용이 절감되기보다는 전자장부를 쓰기 위한 추가인력이 필요하거나 자기세무조정업무를 위한 인력은 필요로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3-4〉 정확한 세금계산



이는 성실납세제도가 회계·세무사에게 또 다른 세무서비스를 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부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성실납세제도의 하나의 인센티브인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그림 3-5〉 세원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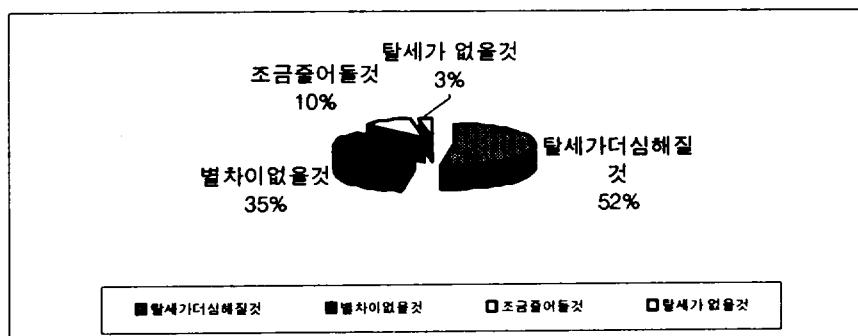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세원확보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지금에 비해 세원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29%가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7%는 '쉬워지긴 하지만 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16%는 '세원은 늘지만 확보는 별 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성실납세제도가 지금보다는 쉽게 더 많은 세원확보가 예상이 되지만 제도의 악용으로 또 다른 세원이 제도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즉, 성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자위적일 가능성이 있고, 자영업자의 소득노출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현금거래수수가 일반화되

어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이 더욱 어려워지고 제도적으로 이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을 뜻한다.

3.2.5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금 탈루 가능성

성실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탈세 위험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52%가 '탈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비해 '탈세가 없을 것',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3%, 10%로 성실납세제도가 오히려 탈세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과세형평성 문제와 탈세를 정부가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직급별, 규모별에 의한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견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급별에 대한 카이 제곱값은 12.4675, p값은 0.0059로 직급별에 따른 회계·세무사무실 직원들의 성실납세제도 도입 시 탈세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6> 탈세가능성



즉 회계·세무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 회계사·세무사와 사무장 등의 간부급들은 탈루가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비간부급인 일반 세무·회계 사무실 근무자들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세무·회계 업계의 위기의식인지, 성실납세제도의 인지 수준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간부급이 비간부급에 비해 좀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무·회계 사무실 규모와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탈루 견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금거래 축소신고가 여전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지금의 현실과 세무조사 등의 검증 기능이 무력화해져서, 규모에 관계없이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탈루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성실납세제도 도입 시 탈세 가능성 카이분석

질 문 제 목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탈세 가능성 카이분석								
		탈세 가능 실태점	탈세의 수준 임금	탈세의 수준 부동산	탈세의 수준 영업	탈세의 수준 기타	탈세의 수준 전체	카이제곱 값	p값	
직급	간부급 빈도 %	18 22.50%	3 3.75%	0 0.00%	1 1.25%	22 27.50%	12.4675, 6.3634	0.0059 0.0116		
	비간부급 빈도 %	24 30.00%	25 31.25%	8 10%	1 1.25%	58 72.50%				
합계	빈도 %	42 52.50%	28 35%	8 10%	2 2.50%	80 100%				
사무실 규모	100개 이하 빈도 %	18 30.51%	13 22.03%	0 0.00%	0 0.00%	31 52.34%	5.0244, 1.1591	0.2848 0.2817		
	100~200 빈도 %	11 18.64%	6 10.17%	3 5.08%	0 0.00%	20 33.90%				
	200개 이상 빈도 %	4 6.78%	3 5.08%	1 1.69%	0 0.00%	8 13.56%				
합계	빈도 %	33 55.93%	22 37.29%	4 6.78%	0 0.00%	59 100%				

3.2.6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변화 예상

〈표 3-6〉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 업계변화 예상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사(회계사)업종 변화 예상도		
예상 변화 상황	응답자 수	비율
업종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사무실이 늘 것이다.	23	28.75%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좀 어려워질 것이다.	39	48.75%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4	17.50%
세무업무가 더욱 확장되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1	1.25%
잘 모르겠다.	3	3.75%
합계	80	100%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세무·회계 업종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수의 절반이상인 48.8%가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28.8%가 '폐업하는 사무실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사)업종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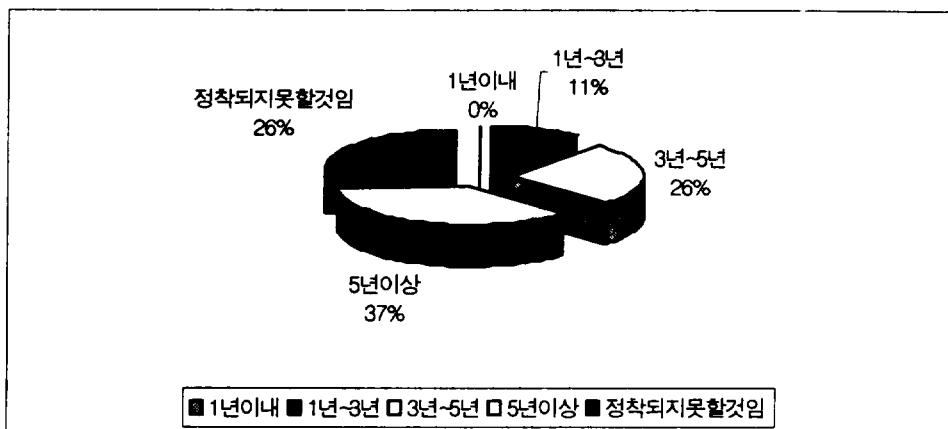
직급별에 의한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변화 예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직급을 두 군으로 나누어서 회계사·세무사와 사무장을 간부급으로, 과장·대리와 일반근무자를 비간부급으로 분류하여 카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직급별에 대한 카이제곱값은 4.1965, p값은 0.2410으로 직급별에 따른 회계·세무사무실 직원들의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95% 신뢰수준에서는 세무·회계 사무실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방향의 업계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는 세무·회계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성실납세제도가 도입이 되면 업계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90% 신뢰수준에서는 사무실 규모에 따라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 업계변화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 업계변화 카이분석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 업계변화 카이분석									
직급	간부급	빈도 %	6 7.79%	9 11.69%	7 9.09%	0 0.00%	22 28.57%	4.1965, 1.0784	0.2410 0.2991
	비간부급	빈도 %	17 22.08%	30 38.96%	7 9.09%	1 1.30%	55 71.43%		
합계	빈도 %	23 29.87%	39 50.65%	14 18.18%	1 1.30%	77 100%			
사무실 규모	100개 이하	빈도 %	5 8.77%	19 33.33%	5 8.77%	0 0.00%	29 50.88%	11.7297, 0.1929	0.0683 0.6605
	100~200	빈도 %	6 10.53%	9 15.79%	5 8.77%	0 0.00%	20 35.09%		
	200개 이상	빈도 %	4 7.02%	2 3.51%	1 1.75%	1 1.75%	8 14.04%		
합계	빈도 %	15 26.32%	30 52.63%	11 19.30%	1 1.75%	57 100%			

〈그림 3-7〉 정착시기



성실납세제도가 정착되기까지의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묻는 질문에서는 26%가 '3~5년' 37%가 '5년 이상'을 응답하였고, 26%는 '아예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제도의 초기 정착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표 3-8〉 성실납세제도 도입 시 선결과제

과제	선택 대상	선택 비율
회계의 기초정보교육 및 단계별 교육여부	29	36.3%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홍보	28	35%
납세제도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여부	14	17.5%
전자장부 사용에 따른 전산교육	9	11.3%
합계	80	100.00%

성실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이전에 시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6.3%가 '회계의 기초정보교육 및 단계별 교육 여부'를 35%가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홍보'를 응답하였고, 17.5%는 '납세제도의 획일화된 프로그램 여부', 11.3%는 '전자장부 사용에 따른 전산교육'을 응답하였다. 이 제도의 홍보와 더불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산교육보다는 회계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 이 제도의 당사자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의 기본 회계지식이 없이는 성실납세제도의 성공이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V. 연구의 시사점과 맷음말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사·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의 의식구조를 밝힘으로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책을 입안자 및 실무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본인 나름대로 우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정분야에서 필요한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성실납세제도의 경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절차를 간소화해 성실하게 신고해 온 중소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직도 일부에선 현금거래 축소신고가 여전하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납세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세무·회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강한 부정적인 입장과 세무·회계업계 장래를 위축할 것이라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탈세방지의 효과는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직급에 따라 부

정적인 의견의 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간부급이 간부급보다는 탈세방지 효과에 덜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설문지는 세무·회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결과이고, 간부급이 생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고 일반근무자들은 이차적인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성실납세제도의 도입 시 장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카이분석을 통하여 90% 신뢰수준에서 세무·회계사 사무실 규모에 따라 세무·회계업계 장래를 위축할 것이라고 통계적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더 받을 것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을 실시하면서 공인회계사·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이 세무정책이나 제도변화에 민감하고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등을 주된 고객으로 하고, 회계처리, 세무상담 및 신고 등을 통해 수수료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이들 영업에 치명타를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부정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문지 응답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도입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전자장부의 기입의 어려움이나 현실상 없앨 수 없는 장부기입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편의성은 세무 당국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다.

중소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능력이 미진하고 성실 납세의식이 부족한 시점에서 성실납세제도 도입으로 자칫 공평과세를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 성실납세제도를 통해 도입하는 전자장부를 하더라도 원천적인 매출누락과 기술적인 누락은 방지할 수 없고, 정부가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자로 성실 사업자를 정했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또한 국세청이 준비 중인 전자장부는 기장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자장부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유효하지만 직접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이 사업자가 세금문제에서 벗어나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래 취지에 오히려 벗어나 제2의 비용부담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나 관련기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할 것이다. 세무·회계사가 대리로 성실납세제도의 전자신고를 하든지 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든지 정부가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대리하는 전자신고에 대해서도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전자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납세 협력비용을 보전해 주고, 납세자는 이 공제액으로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지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는 납세자의 모든 세무신고를 전자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세무사·정부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납세의식의 생활화나 성실납세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반정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현실에서 보면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일부 사업자의 경우 탈세의 수단으

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의 과세 시스템으로는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탈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최소화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확대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와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와 직불거래가 명실상부하게 정착 한 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과표 양성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제도의 활성화, 및 국선세무·회계사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사업자들에게 성실납세제도의 목적과 장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식을 우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설문대상자를 성실납세제도 실지 이용자인 자영업자나 중소업자의 의견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앞으로 설문조사대상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구결과가 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 비교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중호, (2002), 추계과세제도 및 기장유인제도가 신고납세와 과세양성화에 미치는 효과, 세무학연구, 제19권 제1호, 2002. 8. 23-42.
- 심태섭, (2001), “국세청 납세자 편의제도에 대한 만족도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8권 0호
- 유일호, (1998), “우리나라의 탈세규모의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행정과 조세정책 현진권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논문집 98-1.
- 세무사회, (2005),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성실납세제도 도입” 토론회
- 임주영·정영현, (1995),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재정경제부, (2005), 국회감사자료, 세제실.
- 전태영, (1998), “세무서비스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학연구, 제1권 창간호, 211-235.
- 정규언·오윤택, (2005), 자영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저널, 제6권 제3호, 7-28
- 현진권·김용대, (2003),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는가?”, 재정논집 제18집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현진권·박창균·강병민, (2002), 실험자료를 사용한 납세순옹행위의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59-80.
- Collins, J.H., Milliron, V.C. and Toy, D.R, (1990), Factors Associated with Household Demand for Tax Prepar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12): 9-25.
- Falkinger, Josef and Herbert Walther, (1991), “Rewards versus Penalties : on a New Policy Against Tax Evasion”, Public Finance Quarterly 19(1).
- Nagin, Daniel, (1990), “Policy Options for Combatting Tax Noncomplianc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9(1).
- Smitch, Kent and Loretta Stalans, (1991), “Encouraging Tax Compliance with Positive Incentives: A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Direction”, Law & Policy 13(1).
- Yoo, Ilho and Jin K. Hyun, (1998),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Black Economy : Empirical Evidence Using Micro-Level Data,” Working Paper 98-04.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 Study on Tax Agent's Consciousness about Introduction of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Author : Kim, Dongwuk* · Ko, Seonghyo** · Lee, Sangbong**

ABSTRAC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MOFE) and the association of Tax accountants are on a collision course over a ministry's plan to introduce a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If the system is adopted, the government could impose and collect taxes based on computerized data from smaller firms and self-employed worker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ax accountants' consciousness about introduction of the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s that many tax accountants in Jeju have apposed it vehemently, citing a lack of infrastructure and cost problems and may see their incomes fall. In addition, they appear to view that the system is not effective for a more transport and fair taxation system. But workers in a low position are less negative to the effect of tax evasion than in a high position.

The finding on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is premature to adopt the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because the country has not get enough infrastructure. It needs to have more discussions with parties having conflicting interest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the new system.

Key Words: Simplified Taxation System, Tax Agent, Tax evasion, Smaller Firms, Self-Employed Worker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Cheju National University